

<要 約>

I. 美中通商摩擦의 背景과 展開

(1) 美中通商摩擦의 背景

- (美國의 產業競爭力 低下) 1985년경부터 상호주의 무역법안이 급증.
- (知的財産權 保護의 意義) 수퍼 301조와 함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
- (클린턴 行政府의 通商戰略)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結果 重視型 통상정책 기조를 답습하고 있었음. 그러나 1994년 상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하여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간의 경제관계 성립함에 따라 기본전략을 계승하면서 단기적인 성과 확보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通商政策의 基調 變化.

II. 美中通商摩擦의 展開와 展望

(1) 양국의 전략

미국	대내적 전략	의회와 업계의 반발 극소화
	대외적 전략	中國의 讓步를 얻기 위한 手段으로서 報復措置로 中國의 政情 不安 利用
중국	대내적 전략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때 직면할 他政派의 비판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수단
	대외적 전략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WTO 가입의 지렛대로 활용

(2) 美中通商摩擦의 展望

- 협상의 타결내용은 1) 중국은 CD 복제공장의 일부 폐쇄 및 기술대가 지급(지적재산권), 합작사업의 지속을 미국에 제공하고, 2)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동의 시사라는 형태.
-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에 동의를 시사한다고 할지라도 WTO 가입 협상은 일본, 유럽 등과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협상의 決裂과 相互 報復措置의 實行은 그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지만 稀薄.

III. 美中通商摩擦과 韓國經濟

(1) 美中通商摩擦의 效果

- 直接的 效果 : 중국과 한국의 산업구조 차이로 직접적 영향은 미미
- 間接的 效果 : 美國의 通商政策 變化 즉 保護主義 傾向의 強化 可能性

(2) 美國의 對韓 通商問題 提起의 性格

1) 最近의 美國의 對韓 通商壓力의 性格

- 對韓 通商壓力의 性格 : 미국이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음.
 - (韓美摩擦의 豫想 爭點) : 한미간 가장 큰 통상 쟁점은 자동차·부품과 비관세장벽 (정부인증제도 등)이 될 가능성이 높음.

2) 美國의 對韓 通商認識과 韓國 對應의 問題點

- (압력을 가하면 계속 물러서는 국가)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위협할 경우 협상 없이도 계속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는 국가라고 인식
 - (問題點) 1)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것, 2)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대

적인 카드(예, 중국의 경우 합작사업 등) 개발이 미흡 등이 원인임.

(3) 韓國의 對應戰略

1) 美中通商摩擦에 대한 戰略

○ 中國의 WTO加入과 관련한 戰略 : 中國의 以夷制夷 戰略 利用

- (戰略의 核心) 한국 정부는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지원하는 조건으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대외적 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中國의 WTO加入 協商의 焦點) 중국은 WTO 가입시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반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개도국 우대조치를 축소하거나 이를 담보로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 우대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중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눈에 띠지 않게 약속하는 대가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환경 개선에 주력.

○ 企業의 對應

- 단기적으로는 鄧死後 중국의 政情不安이 예상되지만 중국의 시장경제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중국시장의 잠재적인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中國投資 戰略) 기업은 향후 도래할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단기적인 투자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국투자 확대.
- (短期戰略) 현재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투자 가능 산업의 조사, 중국 상관행의 이해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장기적 투자 준비.

2) 美國의 對韓 通商壓力에 대한 戰略

- (새로운 協商 카드의 開發) 정부는 연초 나타나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후려치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에 제시할 새로운 카드를 개발.
 - 미국의 陰性的 輸入規制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인 공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民官合同의 機構 설립(實質的 內國民待遇 確保) 등이 필요.
- (市場多邊化와 海外直投規制緩和) 보복조치 위협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 (透明性 確保) 미국의 통상압력이 연초에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전년 11월에서 그해 1월 사이에 매년 개방 계획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
- (通商政策 調整機構의 設置)
- (通商懸案에 대한 調査 및 對應策 事前 準備) 국내의 경제제도 중 교역 상대국이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대응책 마련
- (通商外交의 焦點 多邊化) 통상외교의 초점을 행정부에만 집중하는 것은 곤란하고, 의회와 이익집단에까지 확대하여야 함.
- (企業) 기업은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와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통상압력을 회피하는 것이 필요함.

I. 美中通商摩擦의 背景과 展開

(클린턴 行政府의 通商戰略)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結果重視型 통상정책 기조를 답습하고 있었지만 1994년 상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하여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간의 경제관계 성립함에 따라 기본전략을 계승하면서 단기적인 성과 확보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通商政策의 基調 變化.

(協商의 展望) 보복조치는 성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2월 26일 까지 타결 예상

(1) 美中通商摩擦의 背景

- (美國의 產業競爭力 低下) 1980년대 미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1985년경부터 상호주의 무역법안이 급증.
- 爭點：知的財產權 保護
 - (知的財產權 保護의 意義) 지적재산권 보호는 1988년 통상법에서 수퍼 301조와 함께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
 - (知的財產權의 戰略的 效果) 1) 신규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의 설정, 2) 기술대가 (Royalty)를 재원으로 새로운 R&D 투자, 3) 상호기술보유(Cross-Licencing)협정을 통한 신기술 접근

(2) 美中通商摩擦의 可視化

- 미중통상마찰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지난 1년간의 협상결과에 불만을 느낀 미국이 2월 6일 보복조치(2월 26일)를 발표하고, 중국이 즉각적인 역보복조치를 발표함으로써 가시화. 2월 6일 양국이 재협상에 합의함으로써 현재 재협상 진행중.
 - 1995. 2. 4. USTR의 켄터 대표가 미국과 중국의 1년간 재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상 결렬을 이유로 중국산 35개 품목(10억 8,000만 달러 규모)에 대해 2월 26일부터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 1995. 2. 4. 중국도 미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역보복조치를 발표. 역보복조치의 주요내용은 1)전자게임기, 게임카드, 컴팩트디스크 등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2)TV 프로그램,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컴팩트디스크의 수입금지, 3)미국과 중국 양국간 합작사업의 중단 등임.

- 1995. 2. 6. 양국이 재협상을 한다는 것에 합의하여 재협상 진행중.
- (美中通商摩擦의 爭點)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가 가장 주요한 쟁점. 특히 컴팩트디스크, 소프트웨어, 영화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쟁점임.
- (클린턴 行政府의 通商戰略)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結果重視型(Result-Oriented) 통상정책 기조를 답습하고 있었음. 그러나 1994년 상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하게 됨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간의 견제관계 성립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과중시형 통상전략을 계승하면서 단기적인 성과 확보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通商政策의 基調가 變化.
 - 클린턴 행정부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정책을 초기에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것은 단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 어려움.
 - 클린턴 행정부의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정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클린턴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어 1994년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상하원을 공화당이 지배하게 되었음. 이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의 견제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1995년 초반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을 높였음.

< 표 1 > 미국과 중국의 보복대상 품목

미국의 보복대상품목	중국의 보복대상품목
사진액자 등 플라스틱 소품, 전화자동응답기 및 휴대용 전화기, 보석함 등 목제품, 스포츠용품, 소형자전거(바퀴크기 55Cm 이하), 캔디, 구연산, 대형플라스틱 백, 식품용 포장용 백, 직조기용 비천공 카드, 비고무 의료용 장갑, 가죽트렁크, 수트케이스, 화장품케이스, 목제인형, 축하카드, 실크장갑, 병어리장갑, 야구미트, 손수건, 솔 및 스카프, 고무·플라스틱, 신발, 보석,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손목시계, 사무용 철제가구 및 부품, 비전기용 램프, 조명기구, 서핑보드, 낚시대 등 35개 품목 100% 보복관세	<p>△100% 수입관세품목 : 전자게임기, 게임카드, 카세트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담배, 주류, 화장품, 사진용필름, 전자교환기</p> <p>△수입금지품목 : 미국산 영화의 TV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p> <p>△합작사업 중단 : 미국과 중국의 자동차합작사업 중단</p>

(3) 美中 通商摩擦과 兩國의 戰略

1) 美國의 戰略 : 2.4.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부과 발표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내외적인 전략의 산물임.

○ 對內的 戰略 : 의회와 업계의 반발 극소화

- 지난 1년간 진행된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상 결과는 의회, 업계 등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업계 등의 요구사항

을 그대로 관철시키기는 어려움.

- 협상결과는 아무런 여과 장치도 없이 타결시키는 것은, 특히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무능력에 대한 대내적인 반발 가능성이 높음.
- 대중국 보복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대내적으로 무역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의회,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보복조치 발표후 협상을 통해 좀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면 파국을 가져올 무역전쟁을 회피하고 대내적인 반발도 잠재울 수 있다는 이중의 고려에서 대중국 보복조치 발표.
- 2.6. 중국과 재협상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 고려에 의한 수순인 것으로 판단됨.

○ 對外的 戰略 : 중국의 政情不安을 이용하여 양보를 얻어냄.

- (中國의 讓步를 얻기 위한 手段으로서 報復措置) 보복조치를 앞세워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 주된 목적.
- 미국이 결과중시형 통상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보복조치를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
- (中國의 政情不安 利用) 보복조치를 발표할 때 또한 고려된 것은 최근의 中國의 政情. 鄧小平의 사망이 임박한 상황으로 鄧 사후 권력계승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강력한 정책을 구사할 수 없다는 중국의 政情을 고려한 것임.
- 중국이 이미 수출을 통한 고도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고, 중국의 최대교역상대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시장진출에 대한 보복은 중국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

2) 中國의 戰略 : 미국의 報復關稅에 대한 중국의 逆報復措置 발표도 중국의 대내외적인 전략에서 나온 것.

○ 對內的 戰略 :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때 직면할 他政派의 비판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수단

- 등 사후 권력 승계를 둘러싼 후계집단간의 경쟁에서 현재 주도권을 쥐고 있는 江澤民 등의 현 집권세력이 미국의 요구를 단순히 수용할 경우 권력 승계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주적인 주권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함.
- 미국의 요구, 즉 중국내 가동되고 있는 28개 불법 CD공장의 즉각적인 폐쇄는, 이를 경영하는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고위 실권자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정치적으로 더욱 곤란.

○ 對外的 戰略

- 대외경제관계에서 미국의 일본후려치기(Japan Bashing)론이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장애 요인의 제거
 - 일본후려치기론은 1980년대 미국에서 대두한 것으로서 일본과의 통상협상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 그 핵심은 동아시아국가와의 통상협상에서는 단순히 원칙에 입각한 협상만으로는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복을 위협하고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 후려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 「1988년 포괄통상·경쟁력법」에서 수퍼 301조라는 강력한 수단을 도입한 것은 이러한 일본후려치기론을 반영한 것.
- WTO 加入 問題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美國의 讓步를 이끌어내는 수단.

II. 美中通商摩擦의 展望

(協商의 妥結 豐想) 1) 중국은 CD 복제공장의 일부 폐쇄 및 기술대가 지급(지적재산권), 합작사업의 지속을 미국에 제공하고, 2)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동의 시사라는 형태.

(協商 妥結 以後의 國際關係)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에 동의를 시사한다고 할지라도 WTO 가입 협상은 일본, 유럽 등과도 전개 예상. 각국의 중국시장에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 예상.

(1) 美國과 中國의 協商カード 分析

○ 美國의 意圖

-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따른 기술대가(Royalty)수입의 증가
- 미국이 이를 위해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현안인 WTO 가입에 대해 미국이 동의하는 것.
-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가장 큰 현안으로 생각하는 WTO 가입에 대한 동의를 지적재산권 보호와 교환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가를 얻으려고 할 것임.
 - 미국이 중국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 중 최우선적인 것은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시장 진출의 우선권 확보 및 이를 위한 직접투자에서의 주도권 확보임.

○ 中國의 對應

- 미국의 의도와 관련해 볼 때 중국이 역보복조치로 발표한 것 중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자동차를 비롯한 대중국 합작사업 논의의 중단임.
 - 미국은 이 과정에서 주도권이 일본이나 유럽으로 넘어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
- **중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합작사업의 계속을 대가로 중국의 WTO 가입을 보장받으려 할 것임.**
-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국이 요구하는 복제공장의 즉각적인 폐쇄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어려울 것임(고위실권자와의 관계).
 - 그러나 등 사후 후계구도를 둘러싼 경쟁관계에서 江澤民 등 현 주도세력은 미국의 압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 CD 복제공장의 즉각적인 폐쇄보다는 일부 공장의 폐쇄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기술대가 지급의 형태를 떨 것으로 예상됨.
 - 이 과정에서 폐쇄되는 공장은 후계구도에서 강택민과 소원한 관계에 있는 정계 실력자가 경영하는 공장일 것임. 이것은 外壓을 內政에 이용하는 방식임.

(2) 協商의 展望

- (美國과의 通商協商 方式) 최종 순간(2.26)까지는 양국이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 각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원칙을 천명하는 형태를 떨 것임(게임이론의 용기-비겁자 낙인 게임의 형태)

- 최종 타결까지는 위기감이 최대로 증폭될 것임.
 - 위기감의 증폭은 양국 협상 당사자의 협상 내용에 대한 위험부담을 극소화시키는 효과.
- 협상의 타결내용은 1)중국은 CD 복제공장의 일부 폐쇄 및 기술대가 지급(지적재산권), 합작사업의 지속을 미국에 제공하고, 2)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동의 시사라는 형태를 떨 것임.
-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에 동의를 시사한다고 할지라도 WTO 가입의 通過儀禮는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만의 동의가 아니라 일본, 유럽 등의 동의도 요구된다. WTO 가입조건을 두고 일본과 유

럽도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얻으려고 할 것임.

- 協商의 決裂과 相互 報復措置의 實行은 그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지만 稀薄.
 - 이 경우 중국의 政情은 내부적으로는 결속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대외 개방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제조치에 선진 각국이 동의 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 일본, 유럽 등은 미국의 공백을 이용하여 중국 진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음.

III. 美中通商摩擦과 對應方案

(效果) 直接的 效果는 중국과 한국의 산업구조 차이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間接的으로 美國의 通商政策이 保護主義 傾向으로 변화할 可能性이 있음.

(미국의 對韓 보복조치 가능성) 보복조치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비관세장벽의 축소 요구가 커질 것임.

(미국의 對韓 인식) 압력을 가하면 계속 물러서는 국가로 인식 통상요구를 강화하고 있음. 이는 1)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것, 2)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대적인 카드(예, 중국의 경우 합작사업 등) 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에 원인이 있음.

(미중통상마찰에 대비) 中國의 以夷制夷 戰略을 利用하여 중국 투자에 대한 실리 확보에 주력하고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시장의 확대에 대비하여 투자 확대

(美國의 對韓 通商壓力에 대한 戰略) 정부는 ① 민관합동으로 미국의 음성적 수입규제를 파악하여 협상에 임하는 등 새로운 協商 카드를 開發하고, ② 市場多邊化와 海外直投規制緩和하고, ③ 전년 11월에서 그해 1월 사이에 매년 개방 계획을 공개하여 통상정책의 透明性을 確保하고, ④ 通商政策 調整機構의 設置, ⑤ 通商懸案에 대한 調查 및 對應策을 事前 準備하고, ⑥ 通商外交의 焦點을 多邊化하여야 하며, 기업은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와 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통상압력을 회피하는 것이 필요함.

(1) 美中通商摩擦의 效果

○ 直接的 效果는 미비함.

· 타격 : 중국 진출 국내 섬유, 봉제, 신발 등 미국의 보복관세 대상품목 생산기업

· 상승 : 국내 신발, 봉제 산업 등 미국의 수입전환 효과가 있는 산업

=> 중국과 한국의 산업구조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 협상이 결렬되어 상호보복치가 실행될 때 수출증가 효과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섬유, 봉제, 신발 산업의 수출비중은 늘어나고(단기적), 중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미국으로부터의 자본재 도입을 한국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한편 미국의 보호주의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장기적)이 높음.

○ 間接的 效果 : 美國 通商政策의 保護主義化 強化

- (保護主義 傾向의 強化 可能性)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재선을 고려하는 클린턴 행정부는 통상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어 미국의 통상정책이 강성으로 전회할 가능성이 있음.

(2) 美國의 對韓 通商問題 提起의 性格

1) 最近의 美國의 對韓 通商壓力의 性格

○ 最近 美國의 對韓 要求 現況

2. 2. USTR 부대표 : 한국의 비관세장벽 비판, 육류·자동차 WTO제소 고려.
2. 6. 켄터 USTR대표: 전자통신제품 형식 승인 등 비관세장벽 개선 요구
2. 8. 미상무부의 6대 통상전략 :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개방 요구할 것.
- 2.10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 : 비관세장벽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막는 나라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라운드 추진

<표 2> 한국과 중국의 대미 통상관계 비교

구 분		한 국	중 국
(단위:억 달러)	대미수출	200(1994년)	360(1994.1.~11)
	대미수입	212(")	85(")
	무역기준 (통관기준)	△ 12	275
지적재산권	· 우선감시대상국 - 문제가 있어 주시하고 있음	· 우선협상대상국 - 1년간 협상을 통해 성과가 없으면 보복조치	
미재무부 환율보고서	「비조작국」	「조작국」지정	
WTO 가입 여부	· WTO 회원국 - 양국간 분쟁은 원칙적으로 WTO에 서 해결	· WTO미가입 - 양국간 쌍무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 하여야 함	
주요수출상품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 산업용전자, 섬유제품	섬유, 신발, 봉제, 완구, 생활용품	

○ 對韓 通商壓力의 性格

- (한미마찰에서 미국이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중국과는 달리 대미교역이 균형수준을 이루고 있고, 주요수출 품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보복조치를 단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반도체, 산업용전자의 경우 부품, 자본재이기 때문에 규제가 어려움.
- (韓美摩擦의 豫想 爭點)
 - 미국의 한국에 대한 주된 요구사항은 자동차와 지적재산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경우 최근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미국이 인정하는 추세임. 따라서 한미간 가장 큰 통상 쟁점은 자동차·부품과 비관세장벽(정부인증제도 등)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언론 보도가 많은 이유) 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수입장벽 지적이 급증하는 것은 3.31 기한의 USTR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 각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의 성격이 짙음. 일반적으로 통상문제는 USTR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 제출관계로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 美國의 對韓 通商認識과 韓國 對應의 問題點

- (압력을 가하면 계속 물러서는 국가)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위협할 경우 협상을 진행시킬 필요없이 계속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는 국가
 - 1994년 상무부의 수퍼 301조의 성과에 관한 보고서에서 수퍼 301조는 실제로 발동할 경우 효과가 거의 없었고, 발동 위협 자체가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그 예로서 일본과 한국을 들었음.
 - (問題點) 보복조치 위협이 성과를 놓은 가장 큰 원인은 1)미국에 대한 수출의 존도가 높다는 것, 2)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대적인 차트(예, 중국의 경우 합작사업 등) 개발이 미흡한 것 등.
 - 미국에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예컨대 미국의 비관세장벽 및 차별조치에 대한 정보수집이 미흡하여 대등한 교환이 이루어지 못한 것도 큰 문제

(3) 韓國의 對應戰略

1) 美中通商摩擦에 대한 戰略

- 中國의 WTO加入에 대해서는 中國의 以夷制夷 戰略을 利用 實利 확보

- (中國의 WTO加入 協商에 대한 對備) 미중통상마찰의 결과가 중국의 WTO 가입 가시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일본 및 유럽 등과 중국의 WTO 가입 조건에 대한 협상이 조만간 전개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
- (戰略의 核心) 한국 정부는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지원하는 조건으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대외적 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中國의 WTO加入 協商의 焦點) 중국은 WTO 가입시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반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개도국 우대조치를 축소하거나 이를 담보로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 우대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중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눈에 띠지 않게 약속하는 대가로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함. 예컨대 자동차산업의 합작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든지, 플랜트 건설사업에 한국기업의 진출을 보장하는 조건을 얹어내는데 주력해야 함.
 - WTO 가입전에 우대조치를 확보한 것은 WTO 가입 후에도 웨이버조치 등을 통해 우선권이 보장될 수 있음.
- (中國의 以夷制夷 戰略 利用) 특히 중국은 미국, 일본, 유럽 등 한 나라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국가를 상호 견제하는 전략(以夷制夷)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이 선진국을 견제하는 주된 카드가 되게 하여야 함.

○ 企業의 對應은 시장 확대에 주목하여 장기적인 투자 전략 추진.

- 단기적으로는 鄧死後 중국의 政情不安이 예상되지만 중국의 시장경제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중국시장의 잠재적인 확대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中國 投資 戰略) 기업은 향후 도래할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단기적인 투자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短期戰略) 현재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투자가능산업의 조사, 중국 상관행의 이해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준비하여야 함.

2) 美國의 對韓 通商壓力에 대한 戰略

- (새로운 協商 카드의 開發) 정부는 연초 나타나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후려치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에 제시할 새로운 카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

- 통상압력이 제기되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국(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똑같이 감소 시키려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隱性的 輸入規制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말 정부와 기업인 공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民官合同의 機構 설립도 고려해야 함.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극소화시키는 것이 요구됨(실질적 내국민대우 확보).
- (市場多邊化와 海外直投規制緩和) 보복조치 위협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위해 최 우선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 직접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요구됨: 직접투자는 통상압력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짐.
- (透明性 確保) 미국의 통상압력이 연초에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것이 제기되기 이전인 전년 11월에서 그해 1월 사이에 매년 개방 계획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통상압력을 줄이는 방법임.
- (通商政策 調整機構의 設置) 통상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통상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설치가 필요
 - 현재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상산업부가 출범하였지만 외무부와의 역할 조정의 문제점, 다른 부처와의 조정권의 미확보 등으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통상정책 수립과 집행이 의문시.
- (通商懸案에 대한 調査 및 對應策 事前 準備) 국내의 경제제도 중 교역 상대국이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대응책 마련
 - 산업지원제도의 경우 WTO체제에서 전반적인 기술개발, 환경보전 차원의 지원은 인정되고 있으므로 지원제도를 이 논리를 바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向後 제기될 通商懸案) 인증절차, 공정거래법 등 제도적인 것을 포함한 경제구조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미국의 통상압력은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닌 경제구조 전반에 대한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예상 분야로서는 토지제도(고지가 문제), 공정거래법(독과점규제), 인증절차와 같은 제도적 분야임.
- (通商外交의 焦點 多邊化) 통상외교의 초점을 행정부에만 집중하는 것은 곤란하고, 의회와 이익집단에까지 확대하여야 함.
- (企業) 기업은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와 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해 통상압력을 회피하는 것이 필요함.

(李龍雨)

<附錄> 美國 通商制度의 特徵과 主要 用語 解說

1. 美國 通商制度의 特徵

1) 미국 통상제도의 특징

○ 통상의 권한 배분관계

[미국 통상의 권한 배분]

1. 통상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은 의회에 있다. : 미국『聯邦憲法』 제1장 제8조 제3항에는 美國議會가 “외국과의 통상 및 각 주간 및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다스린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통상에 관한 권리가 의회에 속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 이후 통상정책의 기본적인 수단이 關稅였고, 그것이 국가재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豫算編成權은 의회에 있고 주요한 國稅編成에 관한 권리도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세에 관한 권한을 의회가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통상정책의 관할권은 上院 財政委員會와 下院 歲入委員會에 있게 된 것이다.
2. 대통령은 외교교섭권을 갖고 있으므로 통상교섭은 의회가 대통령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한다. : 大統領은 『연방헌법』 제2장 제2조 제2항의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갖는다”라는 규정에 의해 外交交涉權을 갖는다. 통상에 관한 기본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항에 의해 통상교섭은 의회가 할 수 없고 행정부가 담당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의 구조는 의회가 통상교섭권을 행정부에 법률로써 위임하고 그것을 견제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 의회와 행정부의 통상에 관한 입장 차이

- 의회는 보호주의적 입장이 더욱 강하다.

- 의원들은 選舉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산업과 그 고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 일반적으로 쇠퇴되어 가고 있는 산업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앞장서서 보호주의적 조치를 요구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미국의 경제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면서 이러한 의원들은 점차 확산.

- 미 의회내의 세력분포를 감안하면 상원이 하원보다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 상원은 전체 주에서 각 2명씩 선출하고 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인구는 공업화가 많이 진전된 곳,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주는 미국에서 아주 동부 몇개주, 서부의 일부 주이다. 따라서 선거구를 고려한 세력분포를 본다면 당연히 상원이 더욱 보호주의적이다.

-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 민주당은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쇠퇴산업이 많이 존재하는 중남부 지역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

-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보호주의적 경향이 약하다.

- 행정부는 한 지역 뿐만 아니라 연방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수 밖에 없고, 소련 등 공산주의권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자본주의권에서 주도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주의적 조치에 소극적이었다.

○ 미국 통상정책의 양태(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 議會와 行政府間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미국 통상정책은 미국 업계의 救濟要請→미 의회의 保護主義 決議→미 행정부의 通商交涉 개시→상대국의 양보→타결이라는 양상을 띠게 된다.
- 이 과정에서 이른바 '絶叫와 安堵의 사이클(cycle of cry and sigh)'이 나타난다. 의회에 각종 보호주의 법안이 제출되고 심의되는 동안 무역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위기감이 조성되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역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라는 绝叫가 확산되지만, 대통령이 의회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보호주의적 법안에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되고 그 강도가 완화되게 되어 安堵하게 된다는 것이다.
-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의회의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통상권도 점차 의회의 管轄로 이전되고 있음. 미국정부는 의회의 통상에 대한 견제 강화를 의식해 계속적으로 통상교섭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통상교섭이 진행되지 않으면 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활용하여 보호주의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迅速承認權(Fasttrack)제도와 통상협상의 지속성]

예컨대, 케네디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통상협상의 추진은 미국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아 추진하는 것인데, 이 경우 통상법에 의해 이른바 '迅速承認權(Fasttrack)'이 행정부에 부여된다. 신속승인권이란 限時的으로 행정부에 통상권을 부여하고 이에 의해 이루어진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가 比准節次를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이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의회가 직접 나서 법안을 성립시켜 직접 협상대상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계속적으로 통상협상을 진행시켜야 하고, 협상을 진행시키지 못하거나 결렬되면 의회의 보호주의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2) 相互主義(Reciprocity) 貿易法案의 擡頭 背景

○ (美國의 產業競爭力 低下) 1980년대 미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1985년경부터 상

호주의 무역법안이 급증.

- (1980年代 成長의 內容) 1980년대 초반 레이건노믹스의 추진과 함께 미국경제는 고성장을 유지하고 실업률이 개선되는 등 외형상으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성장의 내용은 外國資本의 流入과 輸入需要의 擴大에 의한 것.
- (初期 레이건 行政府의 基本認識) 1980년대 초반 레이건 행정부는 保護主義的 措置는 產業의 競爭力を 해치는 것이고, 자유로운 무역이 실현된다면 미국산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 국제경쟁력의 쇠퇴에 의한 산업의 피해를 주로 『1974년 통상법』 제201조의 緊急輸入制限措置의 시행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음(1974년 통상법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해서는 부록 참조).
 -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짐에 따라 의회의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욱 강화. 미국에서 보호주의 움직임은, 주로 불황에 빠진 산업의 기업과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의회가 보호주의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발생.
- (레이건 행정부의 政策轉換: 1985년의 플라자합의와 新通商政策)
 - ① 9월 22일에 발표된 플라자 합의였으며, ② 다른 하나는 9월 23일에 발표된 '신통상정책'.
 - '신통상정책'에서 레이건은 "통상법 제301조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의 불공정무역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서, 레이건 제1기 통상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정책기조 표명을 의미.
 - 「1974년 통상법」의 제301조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표현. 「1974년 통상법」의 제301조는, 「1974년 통상법」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201조나 「1962년 통상확대법」 제232조의 국가안전보장조항과는 달리, GATT 조항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있었던 조항. 제301조는 간략히 말하면 "대통령이 외국의 무역관행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것을 조사하고 제거하기 위해 교섭하고 교섭의 결과가 미흡할 때 대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으로서, 불공정성의 판단과 대응조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GATT정신과 배치되는 것.
- (相互主義 貿易法案과 수퍼301條) 「1988년 포괄통상·경쟁력법」의 성립과 수퍼 301 조의 도입
 - 제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통상전략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과 무역적자는 축소되지 않았고, 급기야 1987년에 미국은 純借入國으로 전락.
 - 의회의 보호주의 입법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었고, 행정부의 통상전략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면서 행정부에 위임되었던 통상권한을 의회가 회수하고, 산업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입법이 의회에 제출.
 - 의회의 보호주의 입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수퍼301조'의 도입으로 특징지워지는 「1988年 包括通商·競爭力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제정.
 - 이 법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교섭권을 행정부에 부여함과 동시에 「1974년 통상법」의 제201조, 제232조, 반덤핑, 지적재산권보호 등의 조항에서 수입보호조치의 실시를 강화하고, 대통령에 부여된 재량권을 축소하며, 보호절차를 간소화한 것 등이 특징.
 - '수퍼301조' 이전의 제301조에 의한 수입구제조치의 활동은, 민간의 제소나 정부의 자율적인 조사

로부터 개시되었음. 그러나 '수퍼301조'의 도입으로 제301조의 발동이 정부의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년 1회씩 義務化. 즉, 「1988년 포괄통상·경쟁력법」에 의해 ①1989년과 1990년 2년간 미국정부는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무역장벽의 존재 여부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②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특히 미국의 무역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나라와 그 무역관행을 '우선국'·'우선관행'으로 지정하며, ③ '우선국'으로 지정된 나라의 '우선관행'에 대해서 미국은 그 관행의 개선을 위해 교섭하고, 그 교섭의 결과가 불충분할 경우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

3) Special 301조의 조사수순

○ (知的財産權 保護의 意義) 지적재산권 보호는 1988년 통상법에서 수퍼 301조와 함께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

- (知的財產權의 包括範圍)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인격적·재산권적 권리를 총칭하는 것.
- (知的財產權 保護의 國際的 論議) 1980년대 중반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보호논의는 공업소유권과 저작권 등 전통적 지적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신지적재산권(컴퓨터 소프트 웨어, 반도체칩배치설계, 무역포장 Trade Dress, 기술적 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기 시작.
 - GATT를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보호 문제도 동경라운드시(1973-79) '위조상품방지협정'의 체결로 시작되었으나 UR에서는 선진국 이 기술선도자로서 지위상실을 우려하여 신지적재산권보호로 논의의 중심을 옮겨감.
 - 미국은 1980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이래 「1988년 포괄통상·경쟁력 법」에 의한 통상관세법 337조의 개정에 이르는 광범위한 제도 개정을 배경으로 지적재산권보호에 주력.
- (美國의 通商戰略에서 知的財產權 保護가 갖는 意義) 1980년대 들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가운데 미국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는 농업, 서비스·정보산업임. 서비스·정보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임.
 -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국 첨단산업의 경쟁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된 예(Intel의 사례) : 인텔은 1984년 12월 마이크로프로세서(MPU)의 코드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된다는 판결을 기초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1993년 다시 세계 제1의 반도체 생산기업으로 부상.

○ (Special 301條의 内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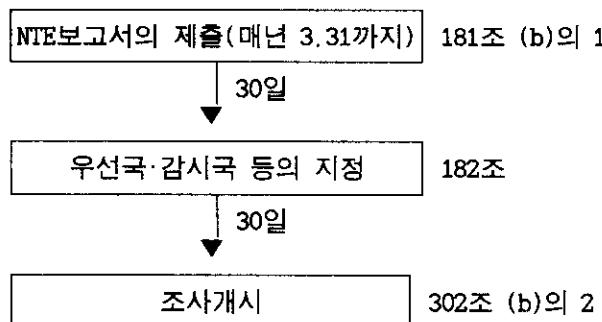
- (Special 301조의 特徵)

- Special 301조는 「1988년 포괄통상·경쟁력법」의 수퍼 301조와 함께 신설된 조항
- 1974년 통상법 301조와 달리 1988년 통상법의 수퍼 301조 등 조항이 갖는 특징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제조치 발동의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USTR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

- Special 301조의 발동 수순

- 1) 보고서의 제출 : USTR은 매년 3월 31일(1989년에만 4월 30일)까지 전년도 외국의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NTE:National Trade Estimate)를 대통령, 상원 재정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
- 2) 지정 : NTE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USTR은 우선국과 감시국을 지정 한다.
 - ① 우선국 :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부정하는 나라(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닌 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외면하는 나라). 또는 지적재산권을 보호에 관해 미국국민(기업)의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접근을 부정하는 나라(관계 국제법, 국제협정을 위반한다든지, 또는 차별적 비판세장벽을 구성하는 법률,정책,관행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보호된 제품의 시장접근을 부정하는 나라).
 - ② 감시국 : 우선국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적재산권의 불충분한 보호·장벽 등 지적재산권에 관해 감시가 필요한 나라.
 - ③ 우선국에 대한 의무 사항 : 우선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의 법률·관행 등에 대해 조사 개시가 의무화

<그림 1> Special 301조의 조사개시까지의 수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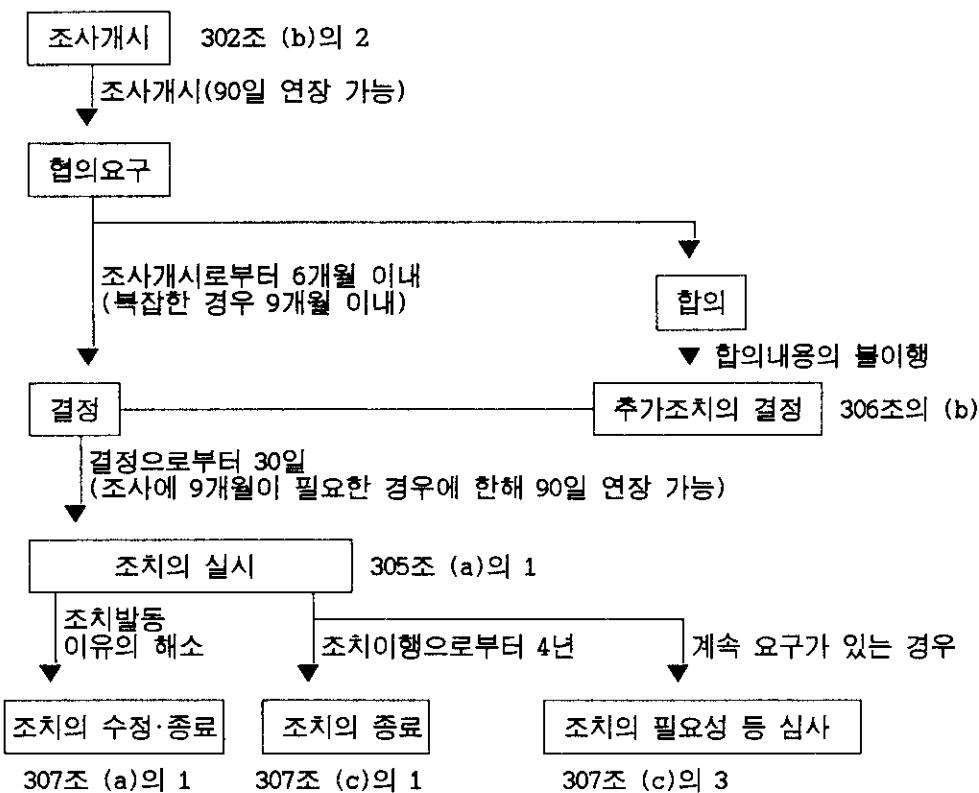


- 조사개시후의 수속

- 조사개시일에 USTR은 관계국에 협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협의의 적절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90일 연기할 수 있다.
- USTR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떠한 301조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복잡한 사업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입법·행정 등의 조치가 입안·이행 등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있을 경우와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제할 경우에는 그 뜻을 판보에 게재하고 9개월 연장할 수 있다.
- USTR은 위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된 301조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9개월이 소요될 경우, 301조 조치에 의해 이익을 얻는 국내산업계의 연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90일까지 조치의 실시를 연기할 수 있다.
- 301조 조치의 발동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이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또 조치를 수정할 필요

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치의 수정도 가능하다. 조치의 수정·종료에 대해서는 이유와 함께 관보에 게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01조 조치는 계속 요구가 없는 경우 4년간 자속된다.

<그림 2> Special 301조의 조사개시후의 수순



2. 主要 用語 解說

[1974년 통상법과 긴급수입제한조치]

미국 『1974년 통상법』 제201조는 GATT 제19조의 緊急輸入制限(Safeguard)措置에 근거한 것이다. GATT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어느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그것과 경쟁하는 국내생산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인 수입제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서는 관세인상, 수입과징금의 부과, 수입할당, 수입허가증 발급 등이다. 이 조치는 특정국에 限定해서 실시할 수 없고 無差別的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미국 통상법에서 이 조항은 1962년에 도입되었으며, 1974년에 발동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수퍼 301조와 Special 301조]

「1988년 포괄통상·경쟁력법」은 수퍼301조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제1303조에는 知的財產權 보호가 미흡한 나라에 대해서는 301조를 사용하여 제제수단을 강구하는 조항 외에 전기통신기기·서비스(제1317조·제1382조) 및 건설(제1305조)에 대해서도 수퍼301조와 동일한 제제수단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한 조항은 Special 301조로 불리운다.

[용기-비겁자 낙인 게임]

용기-비겁자 낙인 게임이란 낭떠러지에서 뒤로 물러서기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 뒤로 물러설수록 용기있는 사람이고, 포기할 경우 비겁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그러나 계속 뒤로 물러나면 두 사람 다 사망하는 위험성이 있다. 두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게임에서는 최후까지 뒤로 물러나다가 최종적인 순간에 극적인 타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結果重視型 通商戰略]

結果重視型 通商戰略은 1988년 이후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1988년 통상법에 따라 구성된 무역정책·협상자문위원회(ACTPN:Adversary Committee for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가 제안한 것임.

結果重視型 通商戰略은 협상의 결과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이끌어내는 통상전략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①부문분석에 기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②‘성공적인 결과’를 정의하여, ③‘성공적인 결과’에 대해 협상하여야 하며, ④‘수퍼301조’를 지렛대로 사용할 것과 협상이 완료된 후에는 ⑤감시체제를 도입하여 ⑥타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